

제260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007년 5월 18일 (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5. 18.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4월 9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4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6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2007. 5. 14),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
(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전호 총무과장)

1. 제안이유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안 제18조제2항)

-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임

나. 헌혈 참여시 공가 인정(안 제22조)

-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의한 헌혈에 참가할 경우 공가로 처리하여, 공직사회에 헌혈참여 확대 유도

다. 특별휴가에 '입양휴가제' 등 도입(안 제23조 및 별표)

-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의 활성화 도모

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 여성공무원이 임신중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연기봉)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19723호, 2006.11.01)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우리도 조례에 반영하는 동시에, 현실에 맞지 않던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일부를 조정¹⁾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그 내용에 이견이 없음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당초 2일에서 3일로 함(통상 3일장이 널리 행하여지므로 2일은 발인 및 장지동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3호
의결 연월일	2007년 5월 18일 (제260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07년 4월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3
----------	-----

제출연월일 : 2007년 4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가일수 산정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안 제18조제2항)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 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임

나. 헌혈 참여시 공가 인정(안 제22조)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의한 헌혈에 참가할 경우 공가로 처리 하여, 공직사회에 헌혈참여 확대 유도

다. 특별휴가에 '입양휴가제' 등 도입(안 제23조 및 별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의 활성화 도모

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여성공무원이 임신중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발췌 : 붙임

6.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중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제2항중 “허가하여야 한다.”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제10항을 제7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

- 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7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3
입 양	본 인	14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 고	<p>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인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p> <p>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8조(연가일수) ①생략</p> <p>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u>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u></p>	<p>제18조(연가일수) ①현행과 같음</p> <p>②, <u>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p>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8.(생략)</p> <p><신설></p>	<p>제22조(공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8.(현행과 같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p>제23조(특별휴가) ①(생략)</p> <p>②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u>허가하여야 한다.</u></p> <p>③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p>	<p>제23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p> <p>②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u>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u></p> <p>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④<u>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u></p> <p>⑤<u>한국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 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u></p> <p><신설></p> <p><신설></p> <p>⑩<u>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u> 2. <u>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u> 3. <u>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u> <p>④<u>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u></p> <p>⑤<u>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u></p> <p>⑥<u>한국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 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u></p> <p>⑦<u>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u></p> <p><삭제></p>

현행			개정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현행과 같음>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3	<현행과 같음>		
<신설>			입양	본인	14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현행과 같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현행과 같음>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현행과 같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현행과 같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3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현행과 같음>		
비교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인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비고>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인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관 련 법 령 발 취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7조의2(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 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7조의3(특별휴가) ①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별표]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3제2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입 양	본인	14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